

<서 면 답 변 서>

○ 임성균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제1호 2000. 11. 24)

<질 의>

◇ 위원님께서는 미군기지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이 유발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환경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동 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 특히 동 협정 제4조에서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복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원상복구 대신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하는 규정으로 주한미군은 환경오염행위로부터 면죄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 ◇ 그러나 최근 동 협정 개정협상이 한미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피의자 신병 인도시기, 미군부대 이전 등과 환경오염방지 및 책임조항 등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만
- ◇ 협상 개최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협상을 한다해도 환경오염방지 및 책임조항 신설은 실현성이 희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 우리 도에서는 동 협상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환경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사례를 수집하고 해당 시·군 및 민간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문제해결을 강구,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호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제1호 2000. 11. 24)

<질 의>

- ◇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의 '98 수해복구 미완공사업 4개소의 준공지연사유와 39쪽 '99 수해복구 15건이 1년이 넘었는데 2001년말에야 준공되는 사유
- ◇ 그리고 40쪽의 금년 제2청사 2000년 수해복구 미완공사업장 12개소가 공사중 6개소, 실시설계중 6개소로 자체설계지원단 구성, 예비비충당 등으로 조기에 완공하여야 하는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
니다.

<답 변>

- ◇ '98수해복구사업의 준공지연사유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절대 공기부족은 물론 사업비가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연된 사업으로 고양시 송포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은 수배복구 및 예방사업으로 총사업비 26,114백만원에 2000. 4~2001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 ◇ 남양주시 내구운교 재가설공사는 총사업비 1,098백만원에 '99년 5월부터 추진,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보상관련 민원으로 공사금지 소송계류중에 있으며, 파주시 갈곡천 개수공사는 총사업비 24,494백만원에 '99년 6월 공사발주하여 현재 전체공정 95%로 내년 우기전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 ◇ 파주시 분수천 수해복구는 '99. 4. 1 연장 4.44km에 대하여 착공시행중 '99년에 재차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으로 분수천 6.24km 전구간을 총사업비 7,900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말 준공예정인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 ◇ '99 수해복구사업의 15개사업 준공지연사유는 의정부시 의정부3동 유수지 증설, 신곡1동 배수펌프장 신설 등으로 토목·전기·기계·건축을 복합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이나
- ◇ 의정부3동 유수지 증설 등 11개 사업은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연천군 연천·장남·진상리배수펌프장은 공정관계상 부득이 내년 3월말 준공예정이오며
- ◇ 이외 궁신교는 연천댐 철거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2000. 6. 20일 실시설계를 완

료하고 9월 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연장이 270m나 되는 장대교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2001년말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2001년 6월 까지 교각 및 교대를 완료하여 우기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10월말 까지는 주민 및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000년 수해복구 미완공사업은 2000. 8. 23 ~ 9. 1 기간중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계획으로 2000. 11. 1 중앙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되어 현재 성립전 예산편성 및 예비비에 대하여 시·군에 자금배정중에 있으며

◇ 40쪽의 미완공사업 12개사업중 7개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이며 구리시 우미천, 남양주시 왕숙천 등 5개사업은 하천개수 및 배수펌프장 등의 대규모사업으로 내년 우기전 주요공정을 완료하여 수해재발 방지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 김순덕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제1호 2000. 11. 24)

<질 의>

◇ 위원님께서 군·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 12월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81개소의 지역 285.9km²를 완화해 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건의사항의 주된 내용은 행정위임지역의 확대와 건축고도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방부에서는 동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99년 12월 31개소 52.1km²에 대해 해결이 가능하고 부분적인 수용이 가능하다고 통보됨에 따라 해당 시·군과 관할부대가 협의하여 사전분석도 및 지번별 조서를 작성,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강원도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을 지난 10월 5일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 ◇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군사관련 제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 위원님께서는 지난 5월 23일 국방부에 건의한 내용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금년 5월 23일 국방부에 건의한 내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일제조사에 관할 군부대가 적극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과 미군공여지 일제조사에 필요한 미군 공여지의 지번별 조서 및 도면을 의뢰하였습니다.
- ◇ 국방부에서 관할 군부대에 문서를 시달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 ◇ 공여지와 관련된 자료는 SOFA 제28조에 의거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거 한미간의 상호합의 없이 공개 및 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질 의>

- ◇ 위원님께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과 각종 위원회에 군부대장을 위촉한 실적과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 ◇ 현재 관련 부대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주요 위원회는 의정부시와 양주군

을 제외하고는 통합방위협의회 또는 안전대책위원회 등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 ◇ 시·군에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위촉된 실적은 거의 없으며 또한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통상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어 임의적으로 중간에 교체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 앞으로 지역개발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관련 부대장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 위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제조사와 사전분석도 작성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군사시설보호구역 일제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지번별 조서가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동 일제조사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과거의 2,109km²보다 15km² 늘어난 2,114km²로 조사되었습니다.
- ◇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과거의 경우 구적기를 활용함으로써 산출면적에 다소 오차가 있었으나 금번 면적은 지번별 조서에 의한 필지별 조사로 정확한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 ◇ 사전분석도 작성은 규제완화 통보된 31개소 중 27개소의 사전분석도를 작성완료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현재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질 의>

- ◇ 위원님께서 미군공여지 반환협의 대상 5개소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지역 민간인, 학계, NGO 단체를 활용한 반환활동의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의정부역 앞 캠프 폴링워터와 캠프 라파디아는 지난 5월 미측에서 미군부대 통합을 위한 캠프 스탠리 인접지역인 의정부시 송산교도소 앞 약 21만평을 공여해 주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시사하였으나 의정부시에서는 반환 추진중인 3개소의 면적인 약 6만평이면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 ◇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대하여는 지난 4월 단계별 해제안 타당성조사 실무합의 각서 서명, 9월 시설분과위 서명, 11월 한미행정협정이 서명되었으며
- ◇ 동두천시 미군공여지는 광암동 장림지역 일원으로 지난 '98년 4월부터 반환을 추진해 오면서 5회에 걸쳐 국방부에 공여지반환 건의 및 촉구를 하였고 9회에 걸쳐 국방부 담당자를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 ◇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군사훈련장은 '99년 12월부터 한미협상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미군공여지와 관련하여 지난 8월에는 의정부시의회에서 공여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의정부 참여연대 시민광장을 방문하여 공여지 반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질 의>

- ◇ 2000년도 업무보고시 '99 수해주택 복구대상 772동중 완공 740동, 추진중인 주택이 20동, 미착공 12동으로 미착공 12동에 대하여도 금년중에 완공하겠다고 보고한 '99 수해주택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지난해 북부지역에서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은 772동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인력지원 등 다양한 조기복구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그중 762동은 복구 완료하였고 3동은 복구공사중에 있으며 7동은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7동에 대한 사유는 2동은 수해피해자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복구를 포기한 상태이고 나머지 5동은 이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질 의>

- ◇ 양원천 하천개수공사와 관련 제2청사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
- ◇ 공사 추진현황 및 민원발생 경위, 민원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우선 양원천 하천개수공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원천 하천정비공사는 지난 '99년도 수해발생 상황 및 하천이용현황, 주변환경,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고 수립하여
- ◇ 하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같은법 제27조의 하천정비시행계획 규정에 의거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공사이며
- ◇ 민원발생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공사시행전 인근 하천에 임의로 물막이용 간이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사용하던 중 집중호우로 급류구간의 간이보 유실 및 하상이 급격히 세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 양원천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하상고가 낮아져 농업용수사용이 어려우니 민원인 소유농지 인근에 기 설치한 낙차공 높이를 상향조정하여 용수사용이 가능하도록 요망하는 사안으로
- ◇ 우리 도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인근에 설치된 낙차보를 이용 용수관을 매설하였으나 민원인 농지와 지반 높이 차로 용수사용이 지난하여 인접 소하천 부분에 30cm 정도의 월류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안과
- ◇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민원인이 갈수기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낙차공 높

이를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또한 민원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낙차공 높이를 상향 조정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계획홍수위를 고려하여 기 설치한 호안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 전체에 대한 재검토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인근 영농인들의 상대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양원천 본류 및 인근 소하천 합류지점에 민원인이 무단설치하여 사용하던 취수시설(보)이 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어 지난 '99년도 집중호우시 수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였던 지역이며

◇ 시공사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민원인 농지에 대하여 양질의 토사를 운반하여 복토하고 경지정리하여 주었으며 농사용 전기료를 13만원 지원하였습니다.

◇ 민원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금번 양원천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기존 하상고가 평균 1m정도 낮아져서 민원인 주장과 같이 일부 농경지의 용수사용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금번 수해복구공사 시행 이전부터 양원천 주변지역은 대부분 하천바닥면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용수 사용을 위하여는 양수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인근지역 영농인 대부분이 자체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인근 농경지의 영농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나 연천군과 적절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 아울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시므로 다시 한 번 민원인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 진접～대성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1억 1,947만원을 과다 계상하게 된 원인과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 변>

- ◇ 진접～대성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국도46호선(경춘국도)의 상습정체구간 해소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1,977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18.2km, 10.0m 폭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 ◇ 당초 본 사업은 남양주시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중인 운수～대성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L=3.2km, 폭 10.0m)을 포함하여 연장 21.2km를 4차선으로 확장코자 사업계획을 수립 '98. 8. 3 (주)건화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황광웅) 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행중 본 사업노선가 인접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도 37호선의 실제용역과 국도46호선 우회도로사업이 4차선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 사업구간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여 지역간 연결 가능만 부여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2차선 포장의 중복구간인 운수～대성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의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비 119,479천원을 감액토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 ◇ 감사원 감사 당시 중복구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119,479천원을 감액토록 지적되었으나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판정되어 '99. 11. 17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64,000천원을 제외한 55,146천원을 감액 설계변경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게는 주의 처분하였고 감액처분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였습니다.
- ◇ 앞으로 설계용역시 상위계획을 사전 충분한 검토를하여 중복 과업지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속한 시일내 본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 파주시의 경우 민간인이 경작중인 국유지와 하천부지는 수해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437만원을 지원했으며
- ◇ 무허가건물이나 빈집 등에 4억 4,900만원을 잘못 지급한 사항과
- ◇ 도로편입예정지인 농경지에 1,900만원을 부당지급한 사항 및
- ◇ 농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볼 수 없는 293명에게 생계지원비 등 2억 9,500만원을 잘못 지급했는데 그 원인과 이후 조치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국유지와 하천부지는 수해복구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한 자에 대하여 복구비 지원대상으로 출장복명하고 수해복구비 4,437만원을 부당지급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감사원에 보고하여 종결처리하였으며
- ◇ 무허가 건물이나 빈집 등에 과다배정한 주택복구비 4억 2,700만원 회수 및 잘못 지급한 주택복구비 2,209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 ◇ 또한 농경지로 복구할 필요가 없는 도로편입 예정지에 지급한 농경지 복구비 1,914만원은 현재 27만 3,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1,886만원은 계속 회수조치중이며
- ◇ 농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볼 수 없는 293명에게 생계지원비 등 2억 9,507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결과 5,446만원을 회수토록 지시되어 4,780만원을 회수조치하였고 나머지 666만원에 대하여는 계속 회수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 남양주시의 경우 수리시설대상에 등록되지 않은 7개 수리시설에 복구비 1억 5,512만원을 배정하고 수해지구 31가구, 농가, 농경지 피해면적을 잘못 계상해 529백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수리시설대상에 등록되지 않은 7개 수리시설복구비 1억 5,512만원에 대하여는 '99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되어 전액 반납정산하였으며
- ◇ 농경지 수해복구비중 매몰된 농경지의 복구비를 산정할 때에는 매몰심도가 10cm ~ 20cm 미만일 경우 10cm로 하고, 20cm 이상일 경우 20cm로 하되 10cm 단위로 평균심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몰심도를 과다 적용하여 529백만원을 과다지급한 바 있습니다.
- ◇ 이에 대하여는 피해농가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영세농으로서 뒤늦게 회수한다면 또한 번의 고통을 주게 되므로 회수치 않고 수해복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하여 종결처리하고 감사원에 보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 고양시는 수해로 돼지 350마리가 폐사한 축산농가에 가축농가를 포기했음에도 허위로 가축입식 영수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2,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과 이후 조치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98 수해피해 축산농가 조사중 허위영수증과 허위매매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여 국고보조금 20,125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 이에 대하여는 '99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전액 회수토록 처분지시 받았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태규에게 전액 반납토록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에 따라 소유재산 압류를 검토한 바 소요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99년 9월부터 월급을 압류하여 현재 2회분을 회수하였으며
- ◇ 향후 전액 회수시까지 지속적으로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질 의>

- ◇ 제2청 관내 국토용지 미보상건은 몇 건이나 있으며 지연된 원인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국토용지 미보상건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 및 하천분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 ◇ 도로체불용지 발생경위는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낮은 보상가에 따른 보상금 미수령, 소유자 미복구 및 지적공부 미정리 등에 의한 보상 미실시, 소유자 거소불명에 따른 미보상 등으로 소유권이 사유지로 존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한수이북은 군의 주둔 및 군작전을 위한 군사시설로 도로를 개설하여 승격되는 등 미보상 상태로 존치된 사항입니다.
- ◇ 도로체불용지는 각각의 도로관리청에서 보상을 계획하고 실시함으로 국도 228필지 49,118㎡에 대하여는 매년 건설교통부 국비가 책정되면 시·군에서 연차적으로 위임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 ◇ 지방도는 538필지 111,839㎡로 조사되어 2000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보상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제2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 해당 시·군에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 ◇ 또한 지방도 체불용지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재산 권리보호와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보상)할 계획입니다.
- ◇ 그리고 하천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1999. 12. 28일 제정된 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1년부터 5년간 미보상토지 1,239필지 2,126천㎡(자연현상 등으로 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포함)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 ◇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하천개수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구역에 들어간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소송결과 보상금을 지급토록 판결이 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지방2급 미불용지는 369필지 365천㎡로 파악된 바 하천공사에 의한 편입여부 등을 확인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 ◇ 금년도 제2청에서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2급 하천 미불용지 21필지 24천㎡ 4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5필지 4천㎡를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 ◇ 제2청사 소관내 형질변경 및 불법산림훼손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포천군 신북면의 경우 위반사례가 몇 건이며 또한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는지 답변바람

<답 변>

- ◇ 포천군 신북면의 농지 및 산림훼손 위반사례는 농지 5건, 산림 7건 등 총 12건이며 행정조치 현황을 살펴보면는 복구완료 3건, 복구중 4건, 재고발 4건, 추인허가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 앞으로는 행정계도와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형질 변경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 의>

- ◇ 가평군 목동교 재가설공사 입찰시 입찰과정에서낙찰하한가를 모 종합건설회사에 낙찰받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 건설본부 북부지소의 입찰담당 공무원은 2000. 8. 25. 15:00 목동교 재가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6개 업체중 공모한 4개 업체에게 특정 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 ◇ 입찰담당 공무원은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4개를 표시해 놓고 번호표를 나누어준 뒤 4개 업체를 호명하여 추첨토록 하고
- ◇ 건축종합건설(주)에게 예정가격 및 최저낙찰 하한가를 사전에 알려주어 투찰토록 하였으며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되도록 선정하였음
- ◇ 입찰담당 공무원과 입찰비리 관련 업체중 1개업체 직원은 2000. 8. 27 구속되고 나머지 업체 직원은 불구속 기소되어 1시(2000. 12. 7)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 ◇ 당시 참여업체 36개 업체중 입찰담합 관련 5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0. 11. 11 재입찰을 실시한 후 2000. 11. 22 영도건설산업(주)와 공사계약을 체결, 착공중에 있으며 2001. 12. 30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 우리 본부에서는 위와 같은 입찰비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입찰개시 30분전에 작성하여 예정가격 사전유출시비를 방지하고 입찰 및 적격심사에 전산을 도입 시행하여 입찰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의>

- ◇ 제2청소관 공동주택이나 교량 등 위험판정을 받은 곳은 몇 개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경기북부지역에 지정고시된 재난위험시설물은 교량 7개소, 터널 1개소, 공동주택 8동, 지하주차장 1개소 등 총 17개소로서
- ◇ 재난위험 공공시설물 8개소중 5개소는 예산을 확보 개·보수중이거나 재가설 추진중에 있으며 재가설 예산이 미확보된 가평군 오촌교 등 3개소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또한 재난위험 민간시설물 9개소중 의정부시에서 매입을 완료한 청광빌라 2개소를 제외한 남양주 남광아파트(2동), 파주 대주연립 등 7개소의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과 협조,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시설주로 하여금 조기에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 ◇ 의정부시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단속시 불법단속건축물 12동중 9동만 철거하고 3개동은 철거한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 변>

- ◇ 위 내용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질 의>

- ◇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중 문산지구, 노곡지구, 석장지구 하도준설사업이 영도건설과 수의계약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본 사업들은 실시설계시부터 공사입찰전까지 영도건설산업(주)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및 라목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문산지구에는 장단체 개수공사, 노곡, 석장지구에는 사미제 개수공사를 영도건설산업(주)에서 시행중에 있어
- ◇ 하도준설공사와 제방개수공사의 운반로가 제방공사 구간과 중복되어 시공과정의 혼잡이 불가피하므로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질 의>

- ◇ 주월, 학곡지구 하도준설공사가 2000. 3. 20일 같은 날 입찰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2000년도에 제2청에서 발주한 수해복구사업은 하천개수 9건, 하도준설 24건, 지방도 2건으로 총 35건으로서
- ◇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하루평균 3~4건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2000. 3. 20일에는 학곡, 주월지구외에도 원당지구 및 문산천 하류등 총 4건의 공사를 입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 파주시 탄현면 소재 만우천 1, 2공구 수의계약의 당위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만우천 하상준설 및 내포리 농경지 복토공사는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토로 성토후 부족한 양을 만우천 준설토로 성토하는 공사로서
- ◇ 성토 및 정지작업 과정에서 쓰레기위생처리시설공사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시공업체와 만우천 준설공사 시공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동일 현장에 2개 업체가 시공할 경우 예상되는 차량 진·출입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 ◇ 또한 1공구인 하류의 준설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상류의 준설을 요구하는 인근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2공구 사업추진을 확정하였으며 종합면허는 1억(부과세 미포함)까지 수의계약요건에 합당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순덕, 김재호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제1호 2000. 11. 24)

<질 의>

- ◇ 아미천 수해복구공사 2-1공구내 내산5교가 현지 지형보다 1.4m 높게 가설된 이유
- ◇ 통합감리를 주지 않은 이유
- ◇ 세월교를 하지 않은 이유
- ◇ 1개 가옥의 보상가격은?
-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
- ◇ 내산5교 가설과 관련 향후 조치계획과 내산5교 군부대앞 좌안부는 보호할 농경지와 거주민이 없어 제방축조가 불합리하며
- ◇ 아미천 1-2공구에 설치한 배수문 역시 현지여건상 배수문 설치가 불필요한 지점임에도 설치되어 있는 등 수해복구공사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 내산5교는 실시설계당시 세월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기간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내산5교 위치를 당초 위치보다 하류부로 100m 이전설치가 요구되었고 군부대 협의시 세월교 대신 우기시에도 군 작전이 가능하도록 교량설치 요구가 있어 현 위치에 계획홍수위에 맞추어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 ◇ 군도3호선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도로를 승상코자 하였으나 도로승상시 배수불량에 따른 침수피해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배수처리방안 등 민원해소를 위해 연천군수와 협의되어 연천군에서 도로승상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 내산5교 군부대앞 좌안부 제방축조는 기존제방이 계획제방고보다 낮은 지역으로 지난 '96년 12월 수립된 아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확장 및 보축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99년도 집중호우시 세월교가 유수흐름을 방해하여 월류하므로서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지역으로서
- ◇ 실시설계에 제방축조 및 돌망태호안을 반영한 사안이며 현지는 농민1가구와 농지

3,200여평이 있어 교량설치가 완료되면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농지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또한 아미천 1-2공구내 배수문이 설치된 지역은 주택·축사와 농경지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 ◇ 본 구간 실시설계용역 당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승상 및 보상관계상 추진이 지연하여 주민의 요청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2000년 5월초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 ◇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동막2교 재가설공사와 관련 도로승상공사시 현지주민이 저지대 일부를 성토하여 배수문 설치효과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 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우기전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통합감리를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금년에 '99수해복구공사 사업장 1,850건을 관리하는 등 업무가 많아 연천군으로 하여금 아미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토록 검토하였으나 연천군 역시 업무가 폭주하여 부득이 자체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 ◇ 우기전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관계로 4~5개월의 짧은 일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선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직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적이라 동감하고 있으며 감리를 주었으면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1개 가옥의 보상가격은 49,694,540원입니다.